

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마이스산업
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0 월 21 일

여 수 시 장 2022.10.21



여수시 조례 제1761호

붙임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제22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마이스산업
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0 월 21 일

여 수 시 장 2022.10.21



여수시 조례 제1761호

붙임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시회(Exhibition)”를 “전시회·이벤트(Exhibition&Event)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국내·국제회의 및 전시회의”를 “국내외 마이스”로, “회의 및 전시회”을 “마이스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”를 “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마이스(MICE)산업”(이하 “마이스산업”이라 한다)이란 회의(Meeting) · 인센티브여행(Incentive Travel) · 컨벤션(Convention) · 전시회(Exhibition)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4.(생략)</p> <p>5. 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마이스(MICE)산업”(이하 “마이스산업”이라 한다)이란 회의(Meeting) · 인센티브여행(Incentive Travel) · 컨벤션(Convention) · 전시회(Exhibition&Event)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 “이벤트(Event)”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, 축제,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) 시장은 국내·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·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 예산(자체예산)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</p>	<p>제5조(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)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 주관 단체가 관내에 마이스를 유치·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 예산(자체예산)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전담기구의 설치·지원)</p> <p>① ~ ③(생략 : 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7조(전담기구의 설치·지원)</p> <p>① ~ ③(생략 : 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</p>
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.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